

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.

□ 납세의무자

- 2020. 6. 1.현재 차량(일반차량, 이륜, 기계장비) 소유자
 - ※ 1년분 세액을 1월,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
 - ※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부과징수

□ 납부기간 : 2020. 6. 16. ~ 6. 30.

- ※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.

□ 자동차세 세율
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: 배기량 기준(cc) 80원 ~ 200원
 - ↳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(본세)에 30% 함께 과세
 - ↳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%씩 경감하여 최고 50%까지 경감
-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: 적재적량 기준(톤) 28,500원 ~ 157,000원
-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: 65,000원(소형), 115,000원(대형)

□ 납부방법

- 금융기관 납부 : 전국 모든 은행 CD/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(통장) 투입 ⇒ 지방세 조회 후 납부
- 가상계좌 :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
- 2020년 6월부터 자동차세, 재산세, 주민세 등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로 납부 가능
- ARS납부 : ☎061-470-1070
- 인터넷 납부 : www.wetax.go.kr(위택스 문의 ⇒ ☎110 정부민원콜센터)

□ 환급금 신청방법(연납 후 이전 · 말소)

- 전화신청 : 영암군청 재무과(☎061-470-2287)
 - ※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.

□ 6월 연납 신청

- 제2기분(7. 1. ~ 12. 31.) 세액 10%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
- 신고납부 기간 : 6. 16. ~ 6. 30.(15일간)

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 (061-470-22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